

## 증치세법 보충 문건 해설(三):

매입세액공제, 자산 재편 비과세 처리,

혼합판매 적용 세율, 납세의무발생시점 등

방면에 대한 명확화

2026.02

Issue 3

### 개요

2026년 1월 30일 재정부, 세무총국은 《증치세 매입세액공제 등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sup>1</sup>(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6]13 호, 이하 “13 호 공고”)를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증치세법하의 중요 보충 문건으로서, 13 호 공고는 원래의 매입세액공제 정책을 유지했고 세분화했으며, 자산 재편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여러 세율에 대해 열거형 지침을 제시했고, “대금을 먼저 수취하고 단계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납세의무발생시점 규칙을 신규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신규 증치세법을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Newsflash 에서는 13 호 공고의 핵심 조항을 심층적으로 해설하고 신규 정책 간의 차이점, 업계 영향 및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불확실한 사항을 분석하여 기업이 신규 정책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지원합니다.

## 상세 내용

### 一、매입세액공제: 처리 간소화, 구분 불가 공제불가 매입세액의 계산

#### 공식 명확화

13 호 공고 제 1 조는 자동차 구매, 국내 여객운송 서비스 구입, 도로·교량 통행 서비스 구입, 구분 불가한 공제불가 매입세액의 안분, 매입세액공제의 형식 요건 등 다섯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납세인이 재화(고정자산 제외)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여 간이과세방법 적용 항목, 증치세 면제항목 및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에 사용하되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begin{aligned} & \text{당기 공제불가 매입세액} \\ &= \text{당기 구분 불가 전체 매입세액} \\ & \times \frac{\left( \begin{array}{l} \text{당기 간이과세방법} \quad \text{당기 증치세 면제} \quad \text{당기 공제 불가} \\ \text{적용 항목 판매액} \quad + \quad \text{항목 판매액} \quad + \quad \text{비과세거래 수입} \end{array} \right)}{\text{당기 전체 판매액} + \text{당기 전체 비과세 거래 수입}} \end{aligned}$$

PwC의 관찰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13 호 공고 제 1 조의 규정은 원래의 정책 및 실무상 처리 방법을 기본적으로 유지했으며, 이를 최적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 시 계산서상 세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철도, 항공운송 전자 티켓의 경우, 원래의 정책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2019]39 호(39 호 공고)는 공식을 채택하여 계산 및 공제하는데, 13 호 공고는 계산서상 명시된 증치세 세액을 직접 공제하여 공제 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정산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13 호 공고에서는 원래 정책하에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 "전자보통계산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세무총국이 재계재한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반납세인이 직원의 여객 신분 정보를 명시한 증치세 전자보통계산서를 취득하면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제가능 세액이 39 호 공고대로 계산서상 명시된 세액에 따라 공제한다는 규정을 계속 따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총국이 향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구분 불가한 공제불가 매입세액이 발생하여 상기 공식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경우, 명확한 수입 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과세 거래 수입 유형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치세법 실시조례》는 구분 불가한 공제불가 매입세액에 대해 연도 종합정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산관리방법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납세인은 후속 보충 문건의 발표에 면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二、자산 재편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신규 적용 조건 추가

13 호 공고는 원래 정책하의 자산 재편 비과세 규정<sup>2</sup>을 유지 및 최적화했고, 해당 규정을 장기 제도(유효기간 미설정)로 처리했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업 유형 전환 및 업그레이드, 양질의 자원 통합에 대한 세수 지원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납세인이 합병, 분할, 매각, 대체 등 방식으로 자산 재편을 실시하는 경우, 4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관련된 재화, 금융상품, 무형자산, 부동산 양도는 증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정책의 핵심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점	13 호 공고에서의 자산 재편 규정	PwC의 관찰
적용 범위 확대	자산 재편과 관련된 재화, 금융상품, 무형자산, 부동산 양도.	원래 정책의 문언적 규정은 "재화, 부동산, 토지사용권"에만 적용됩니다. 실무상 자산 재편에 관한 지적재산권,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비과세 정책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부문과 기업 간에 종종 이견이 있었습니다. 신규 정책은 "재화, 금융상품, 무형자산, 부동산"을 모두 적용 범위에 포괄시킴으로써,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을 줄이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산 패키지 조건 세분화	납세인이 자산 재편을 실시할 때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원래의 규정을 유지했는데, 핵심은 자산 양도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p>채권, 채무 및 직원과 함께 <b>자산 패키지</b>를 구성하여 <b>일괄</b> 양도해야 하며, <b>자산 패키지</b>는 자산, 채권, 채무와 직원을 <b>동시에</b> 포함해야 함.</p>	<p>13 호 공고는 “자산 패키지”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자산 패키지의 구성 요건을 열거했지만, 구체적인 정의와 “연관성”의 판단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p>
<p><b>독립 업무 조건 새로 추가</b></p>	<p>자산 재편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b>독립적으로 운영</b>할 수 있는 경영업무.</p>	<p>자산 재편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업무”일 것을 명확히 요구하여 정책 적용 기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이 비과세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원래 과세대상이었을 개별 자산 양도를 자산 재편으로 포장할 여지를 방지하였습니다.</p> <p>그러나 신규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업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를테면, 업무의 “독립성” 정의 방법, 어떠한 요소를 구비해야 하는지, 기업은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지 등)은 아직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해당 업무가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 완전한 운영팀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지 여부, 독립적인 예산과 재무 시스템을 갖추는지 여부, 독립적인 고객군을 갖추는지 여부 등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p> <p>기업은 재편을 하기 전에 대상 업무의 핵심적인 운영 요소를 정리하고 관련 입증 자료(예: 업무 운영 방안, 재무제표, 인원 배치 리스트 등)를 준비하며, 주관 세무기관과 미리 소통하여 대상 업무가 “독립 운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p>
<p><b>합리적인 상업적 목적 조건 새로 추가</b></p>	<p>자산 재편은 <b>합리적인 상업적 목적</b>을 갖추어야 하며, 증치세 감소, 면제, 연기 납부 또는 조기 환급, 과다 환급을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음.</p>	<p>해당 요구는 《증치세법 실시조례》 제 53 조의 반조세회피 일반 규칙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반조세회피 일반 규칙은 아직 구체적인 인정 표준과 입증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상업적 목적”의 합리성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어 세무국과 기업 간의 분쟁을 초래하기 쉽습니다.</p> <p>기업은 재편을 하기 전에 거래의 상업적 논리 및 핵심적인 목적을 정리하고 관련 설명 자료(예: 재편 방안, 상업계획서, 재무 및 세무 영향 분석 등)를 준비하며, 세무기관과 미리 소통하여 세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방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p>
<p><b>신분 동등성 조건 새로 추가</b></p>	<p>양도자가 일반납세인일 경우, 양수자도 <b>일반납세인</b>이어야 함.</p>	<p>원래의 정책에서는 양수자의 납세인 신분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신규 정책에서는 양도자가 일반납세인이면 양수자도 일반납세인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양도자가 소규모</p>

		납세인일 경우, 13 호 공고에서는 양수자의 신분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b>매입세액공제 규칙 명확화</b>	자산 재편 “증치세 비과세”가 《증치세법 실시조례》 제 22 조에서 규정한 “공제불가 비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함.	13 호 공고에서 해당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세무국과 기업 간의 분쟁을 줄이고 정책 적용의 확실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양도자 말소 시 매입세액공제 이월 규칙 강화</b>	자산 재편 실시로 인해 <b>합병되어</b> 세무 말소 등기를 처리하는 경우, 말소 등기 전 아직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합병 후 납세인이 계속 공제할 수 있음.	13 호 공고는 원래 정책에서의 “말소 기업의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합병”인 경우로 한정시켰으며 적용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신설 분할”이 발생하여 원래 기업이 해산하고 말소하면, 아직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이월하여 공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편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비과세 정책을 적용하는 증치세의 영향을 미리 추정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원래 정책은 양측 주관 세무기관이 《자산 재편 미공제매입세액 이전서》를 전달하는 절차를 규정했는데, 13 호 공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3 호 공고에서는 자산 재편 비과세 정책의 절차상 규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세 원리 측면에서 보면 자산 재편은 증치세 과세대상거래에 속하지 않으며 세수우대혜택 범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문건 체계든 기존의 문건 체계든 비안, 승인 등 절차를 모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인의 입장에서는 13 호 공고에서 일련의 개념적인 판정 조건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절차상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납세인이 과세 및 비과세의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완전한 자산 재편 관련 입증 자료(예: 재편 방안, 자산 패키지 구성 설명, 업무 독립성 분석,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 설명 등)를 준비하여 자체의 거래가 정책 적용 조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며, 주관 세무기관과의 소통, 사전결정 등 방식을 통해 조세 확실성을 획득함으로써 이해의 착오로 인해 비과세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양도가 포함된 단계별 재편과 관련하여, 원래 정책은 “최종 양수자가 노동력 인수자와 동일 단위와 개인인 경우” 비과세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13 호 공고에서 반영되지 않았기에 단계별 재편 거래의 증치세 불확실성을 증가시켰습니다.

### 三、하나의 과세대상거래가 두 개 이상 세율과 연관된 경우(혼합판매): 4 가지 상황에서의 “주된 업무” 명확화

《증치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는 하나의 과세대상거래가 두 개 이상 세율(또는 징수율, 이하 동일)과 연관된 경우, 해당 과세대상거래의 주된 업무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되, 주된 업무는 주체적 지위를 차지하고 거래의 실질과 목적을 반영하며, 종된 업무는 주된 업무에 필요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주된 업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호 공고에서는 4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명시하고 있고 해당 4 가지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 “주된 업무”를 지정했는데, 유사 거래는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	13 호 공고에서의 주된 업무 규정	PwC 의 관찰
소프트웨어 산업	1.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설치, 유지,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b>소프트웨어 제품</b> 의 세율을 적용함.	해당 정책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의 여러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5] 165 호)의 처리 방향을 유지하였고, 업무 행위의 동시 발생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 건축 및 설치 산업	2. 이동식 판잣집, 기계설비, 강구조 부품 등의 재화를 판매하는 동시에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b>재화</b> 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세무 처리가 <b>크게 변경되었습니다</b> : 원래의 정책에서는 <sup>3</sup> 검영으로 처리하여 각각 세금을 계산하며, 일부 설치 서비스는 갑공공사 (甲供工程, 발주처가 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공사) 프로젝트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 10 호를 통해 갑공공사 간이과세의 규정을 취소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3 호 공고를 통해 이러한 경우가 “하나의 거래”에 속하여 직접 재화의 공급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재화의 세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세부담 비용이 과거보다 증가할 것입니다.
충전·배터리 교환 플랫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3. 충전·배터리 교환 업무에서 전력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배터리 교체, 위치 확인,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수수하는 경우, <b>전력 제품</b> 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함.	2025 년 국가세무총국 공식 사이트에서 발표한 “충전·배터리 교환 업무에 관한 증치세 정책 시행 기준” <sup>4</sup> 과 동일합니다. “충전·배터리 교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본질을 보면 구매자에게 전력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며, 구매자가 거래를 성사하는 주요 목적 또한 전력 제품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도 제공되는 것입니다.

		<p>따라서, 충전·배터리 교환 업무의 본질은 전력 판매를 위주로 하는 혼합판매 행위이며, 취득한 전체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력 제품 판매에 따라 13%의 증치세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p>
<p><b>렌터카 플랫폼</b></p>	<p>4. 교통수단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기술 등 서비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임대 서비스의 세율을 적용함.</p>	<p>상기 충전·배터리 교환 업무의 논리와 유사하게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구매하는 목적은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이며, 정보기술, 위치 확인 등 서비스는 부수적 성격을 가지므로 임대 서비스의 세율을 적용합니다.</p>
<p><b>기타 거래</b></p>	<p>납세인이 상기 사례와 유사한 과세대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적용함.</p>	<p>“혼합판매는 기업의 주영업업무에 따라 적용 세율을 판단한다”는 기존 정책의 논리와 달리, 신규 증치세 체계에서는 단일 거래의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 세율을 정의합니다. 다만, 주된 업무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금액 비율, 원가 비율, 거래 실질의 중요성, 고객의 핵심 요구 등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불명확합니다. 13 호 공고에서 열거한 4 가지 전형적인 사례는 관련 납세인에게 어느 정도의 지침을 제공하며, 거래의 실질과 목적을 중심으로 주된 업무를 결정한다는 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유사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상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시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 2 항을 참조하여 재화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특정 업종에서 장비를 판매함과 동시에 고급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치 서비스 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 2 항과 유사한 거래로 간주되어 재화에 적용되는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것인지?</p> <p>더군다나, 13 호 공고는 하나의 거래가 두 개 이상의 세율을 포함하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의 핵심적인 전제는 서로 다른 업무 간 뚜렷한 주종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관련 업무가 분리 가능하고 강한 연관성이 없으며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두 개의 거래”에 해당하기에 구분 결산해야 하며, 관련 세율에 따라 별도로 과세하므로 본 조 규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p> <p>기업이 “재화+서비스”의 거래를 계획할 때 하나의 거래인지 두 개의 거래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의 거래일 경우, 계약서상 거래의 핵심 목적과 부수적·종속적</p>

	업무를 명시하고 납품서, 검수 보고서 등 자료를 보관하며 세무기관과 미리 소통하고 주된 업무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 四、납세의무발생시점: 징수관리 세분화 및 규범화

13 호 공고는 4 가지 경우의 증치세 납세의무발생시점을 명확히 했으며, 단계별 용역제공에 대한 납세의무시점 규칙을 새로 추가하였다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요점	13 호 공고에서의 납세의무 발생시점 규정	PwC 의 관찰
<b>대형 재화 생산·판매의 납세의무 발생시점 규정 간소화</b>	생산 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는 대형 기계설비, 선박, 항공기 등 재화의 경우, 납세의무발생시점은 <b>대금을 수취하거나 서면 계약서상 약정한 청구일</b> 당일로 함.	<p>기존 정책하에 대형 재화의 판매는 직접 수금과 선수금에 따라 다르게 처리합니다: 직접 수금의 경우, 판매 대금을 받거나 판매 대금 청구서를 받는 당일(청구서를 받고 나서도 계약 약정일 또는 재화 발송 시점을 확인해야 함)로 합니다. 선수금의 경우, 선수금을 받거나 서면 계약에서 약정한 수금일 당일로 합니다.</p> <p>13 호 공고는 대형 재화 판매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을 조정하여 계약 약정이나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발생시점을 결정하며, 더이상 직접 수금이나 선수금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재화가 발송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p>
<b>선 수금 후 단계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납세의무 발생시점 신규 규칙</b>	대금을 먼저 수취하고 단계별 또는 횡수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 최초 제공 당일"과 "계약 약정 당일" 둘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 발생시점을 결정하며, 수취한 전체 대금에 대해 증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p>세무 처리가 <b>크게 변경되었습니다</b>: 기존의 정책 재세[2016]36 호(36 호 문건)에서는 일반 용역 선수금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었으며, 용역판매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1) 판매 대금을 수령한 날 또는 2) 판매 대금 청구서를 취득한 날(사전에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일)로 합니다. 여기서 1)은 납세인이 용역 판매 과정 중 또는 완료 후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2)는 서면 계약에서 약정한 지급일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상 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 완료일을 의미합니다. 용역 선수금의 경우,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서면 계약서상 지급일자가 약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완료일 전까지는 증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p> <p>13 호 공고는 "선 수금, 후 단계별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빠른 발생 시점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전체 수금 금액을 일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 신고 지연의 허점을 차단하였습니다.</p>

		<p>납세인은 납세의무 발생시점의 조정에 유의하고 용역 계약, 용역 제공 기록 등 자료를 보관하며 "용역 최초 제공일"을 명확히 정의하여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선 충전 후 소비하는 산업(예: 통신요금 선불, 교육, 임대, 부동산 관리, 요식업 서비스 등)의 경우, 신규 납세의무 발생시점 판정 규칙이 해당 업무 모델에 미치는 세무 영향을 적시에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일괄 납부한 후 소비자 환불 발생 시, 세액환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p>
<p><b>부동산 판매의 납세의무 발생시점 세분화</b></p>	<p>소유권 등기 완료 시점 또는 부동산 실제 인도 시점 중 빠른 시점으로 부동산 양도 완료 시점을 결정함.(즉 납세의무 발생시점)</p>	<p>원래의 정책은 "소유권 등기"만을 부동산 양도 완료의 기준으로 삼았을 뿐, "실제 인도" 상황(예: 부동산 선 인도, 소유권 등기 후 처리)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3 호 공고는 이 규정을 세분화하여 "소유권 등기"와 "실제 인도" 모두 양도 완료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했으며, 빠른 발생 시점 우선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 발생시점을 결정함으로써, 인도와 소유권 증서 발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납세 시점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기업은 납세 의무를 제때 이행하고, "인도일"과 관련된 증빙 자료(예: 인도 통지서, 입주자 서명 확인 기록, 열쇠 인수·인계 기록 등)를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p>
<p><b>금융기관 대출 미수이자 수익 규칙 적용 범위의 미세 조정</b></p>	<p>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한 후 이자결산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발생한 미수이자 는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부과하며, 결산일로부터 90 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미수이자 는 당장 증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 이자를 수령할 때 부과합니다.</p> <p>금융기관이란 은행, 신용사, 금융 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 회사, 금융리스회사, 증권투자운용 회사 및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어 금융 및 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기타 금융기관을 말합니다.</p>	<p>36 호 문건과 재세[2016]140 호의 규정을 유지했으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미세 조정하여 "증권투자펀드"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p>

## 주의사항

전반적으로 볼 때, 13 호 공고는 기업의 빈번한 세무 관련 거래 상황에 대해 규칙을 최적화하고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책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실무에서 존재해 온 애로사항과 논쟁점을 해결하여 징수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전에 신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야 M&A 및 구조조정, 산업 통합을 검토하려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거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기업(대량의 무형자산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및 금융기업(금융상품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의 자산 재조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호재가 됩니다. 다만, 기업은 신규 비과세 처리 조건(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업무"의 정의)과 관련하여 세무기관과 미리 확인하여 정책 적용상의 착오를 방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건축 및 설치, 충전 및 배터리 교환, 교통수단 임대 플랫폼 등 산업과 관련하여, 주된 업무의 명확화는 기업의 세무처리 불확실성 감소에 도움이 되는데, 일체형 거래가 발생한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도 업무 프로세스, 계약 약정을 되도록 빨리 정리하고 주된 업무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적용 세율 판단을 완료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이번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 수금 후 단계별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입니다. 해당 기업은 거래 모델과 수금 모델을 개선하여 세무 비용과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업은 매입세액공제의 신규 규정에 유의하고 내부 증빙 관리와 재무 결산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장기자산, 공제불가 매입세액 안분 등 규정을 결합하여 시스템과 문서가 세무 컴플라이언스 신고를 위한 뒷받침이 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PwC 는 증치세 신규 규정 및 지방 세무기관의 시행 기준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세무 자문 및 실무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효율적으로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준법 경영과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주석

1.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13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47494/content.html>

2. 기존의 자산 재편 정책:

- 국가세무총국 공고[2011]13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217/content.html>

- 국가세무총국 공고[2012]55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334/content.html>

- 국가세무총국 공고[2013]66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410/content.html>

- 재세[2016]36 호 부록 2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3752/content.html>

3. 이동식 판잣집, 기계설비, 강구조 부품 등의 재화를 판매하는 동시에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기존 정책:

- 국가세무총국 공고[2017]11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728/content.html>

- 국가세무총국 공고[2018]42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814/content.html>

4. 충전·배터리 교환 업무에 관한 증치세 정책 시행 기준

<https://www.chinatax.gov.cn/chinatax/c102414/c5238551/content.html>

##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mailto: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mailto: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mailto: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 新知

##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6 年 2 月 11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6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